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7. 25.(목) 총 4매(본문 4매)	
담당 부서	건축안전팀	담 당 자	· 팀장 홍성준, 사무관 김부병, 주무관 이창욱 · ☎ (044) 201-4988, 4992	
보 도 일 시		2019년 7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 ◆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 확대 :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멤퍼
- ◆ 단열재 겹면 밀도, 성능 표기 ⇨ 시공·감리자 쉽게 화재성능 추정
- ◆ 시험성적서 통합 DB 운용 ⇨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

구분	지금은	앞으로는
사례 1	건축시공자 A씨는 납품받은 방화문이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 방화문인지를 알 수 없어 답답하다.	건축시공자 A씨는 방화문 제조업자, 유통업자가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방화문임을 서명한 품질관리서를 제출 받아 안심하고 시공할 수 있다.
사례 2	건축감리 B씨는 시공된 단열재가 불에 잘 타는 단열재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성적서 외에는 없어 답답하다.	건축감리 B씨는 단열재 겹면에 표기된 정보를 통해 자재의 화재안전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례 3	건축감리 C씨는 방화셔터 공급업자 D씨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여부를 의심되어도 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다.	건축감리 C씨는 자재의 화재성능 시험 성적서가 등재되어 있는 누리집을 통하여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6일~9.4일)하였다.

※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 방화문 제조·유통업자 106명 입건(인천지방경찰청)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자재의 적합 및 공급 여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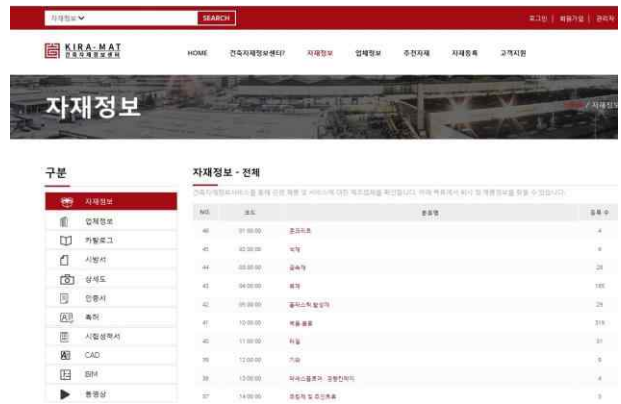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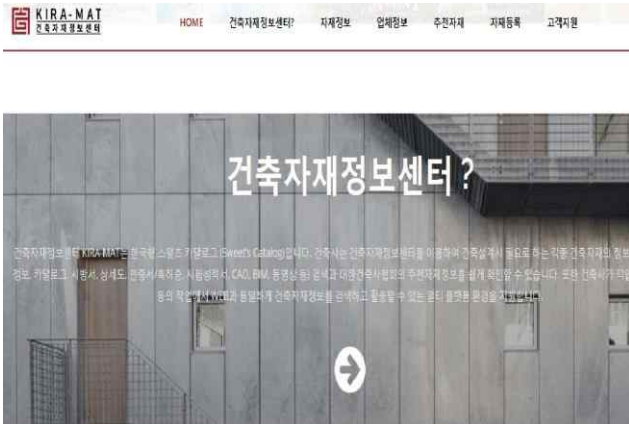
○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②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자재)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 (<http://www.kiramat.kira.or.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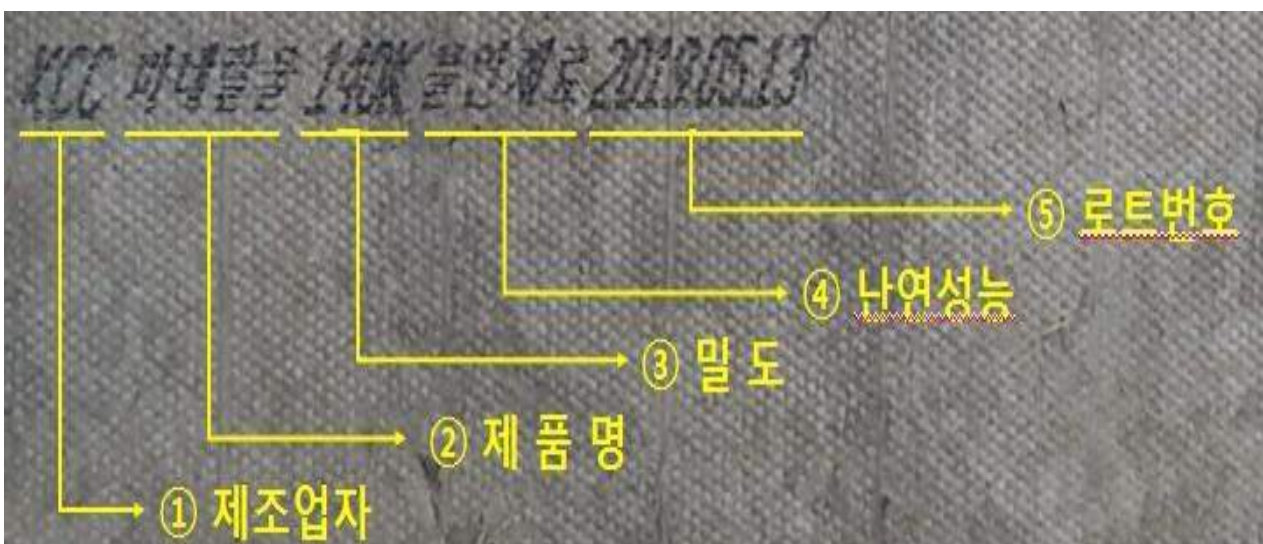
③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단열재 성능정보 :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순

○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 예시 >



□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 을 운영(‘19.4월~)하여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 자문단장 :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前 화재소방학회 회장)


참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협회, 30명 화재공학 전문가 참여

○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 교수, 전 화재소방학회 회장)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26일~9.4일, 40일간)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공공누리 권역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김부병 사무관(☎ 044-201-49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